



부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4고정1188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 A
검 사 박영웅(기소), 권소나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(국선)
판 결 선 고 2025. 9. 10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, 지하 1층에 있는 'C'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.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그럼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2024. 3. 13. 22:59경 사단법인 D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, E 작사·작곡의 곡명 'F'라는 곡을 위 주점에서 스피커를 통해 재생하였다.

이로써, 피고인은 D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[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E 작사·작곡의 곡명 'F'라는 곡을 재생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]
1. D 부산센터의 고소장
1. G의 진술서
1. 이 법원의 D 부산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
1.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명세서, 음악저작권 사용에 대한 안내문, 사업자등록증
1. 수사보고서(본건 영상첨부), 수사보고서(C 사업자등록정보), 수사보고서(피의자 전화 통화 및 인적사항 특정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(저작재산권침해의 점, 벌금형 선택)
1. 노역장유치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1. 가납명령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



1. 주장의 요지

피고인은 D와 저작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오다가 이를 연체한 것일 뿐이고, 위 저작권 사용에 관한 계약에 의하면 영업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있는바,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2. 판단

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, 즉 ① 피고인은 2022. 8.경 D와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용료를 납부하고 음악저작물을 사용해온 점, ② 이후 피고인이 사용료를 미납하여 D가 수차례 독촉한 끝에 2022. 12. 23.경 피고인에게 미납된 사용료를 2022. 12. 25.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낸 점, ③ D 부산센터의 직원이 2023. 1. 18.경 및 2023. 2. 21.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점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최고서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던 점, ④ 그 후에도 피고인이 연체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D와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, 피고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24. 3. 13.경 D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양형의 이유

1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: 벌금 5만 원 ~ 5,000만 원
2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


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

3. 선고형의 결정 : 벌금 30만 원

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용권한이 없는 음악저작물을 재생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, D와 저작권 사용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.

다만,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,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경력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와 경위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심학식 _____